

<별표 3> 전자지급수단의 세부적 이용한도

가.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

(단위 : 만원)

구 분	발행권면 한도	
	무기명식 ¹⁾	기명식 ²⁾
전자화폐	5	200
선불전자지급수단	50	200

1) 실지명의 확인이 없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지 않고 발행된 전자화폐 내지 선불전자지급수단

2)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전자화폐 내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나. 전자자금이체 한도(지금이체의 경우)

(단위 : 억원)

구 분		1회 이체한도	1일 이체한도
현금카드 ¹⁾	인출한도	0.01	0.06
	이체한도	0.06	0.3
텔레뱅킹 ²⁾	개인	0.5	2.5
	법인	1	5
인터넷뱅킹 ³⁾	개인	1	5
	법인	10	50
모바일뱅킹 ⁴⁾		1	5
메일뱅킹 ⁵⁾		0.1	0.5

1) 금융회사의 자동화기기(CD/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매체

2) 유선전화를 통하여 예금조회, 자금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방식

3)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예금조회, 자금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방식

4) 이동통신용 기기에 IC칩을 넣거나 banking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예금조회, 자금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방식

5) 예금계좌와 연결된 전자우편 주소(기타 전화번호)를 통해 자금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방식

*** 전자자금이체시 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직불전자지급수단 이용 한도

(단위 : 만원)

구 분	1회 이용한도	1일 이용한도
직불전자지급수단	10000	10000
실명증표확인 외의 본인확인수단을 이용하여 발급된 직불전자지급수단	200	200